

# 학교법인세기학원 교원징계위원회운영규정

(개정 2012.08.08. 법인이사회)

(개정 2012.08.31. 법인이사회)

(개정 2018.08.24. 법인이사회)

(개정 2019.06.26. 법인이사회)

(개정 2019.06.26. 법인이사회)

(개정 2022.06.30. 법인이사회)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세기학원 정관 제6장 제2절의 교원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원의 인사질서를 확립하고 신분보장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8.8)

**제2조 (정의)** 제1조에서 "교원"이라 함은 학교법인세기학원 및 대구예술대학교 교원을 말한다.(개정 2012.8.8)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기학원 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8.8)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06.30)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06.30)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06.30)

1.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22.06.30)

1.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⑥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22.06.30)

**제4조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④ 간사와 서기는 당해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5조 (징계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심히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및 근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교직원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한다.

③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신설 2018.08.24.)

④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신설 2018.08.24.)

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신설 2018.08.24.)

⑥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신설 2018.08.24.)

**제6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임면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서 제5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08.24.>

③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2 (징계사유의 시효)** ① 임면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②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제 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해당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8.24.)

**제7조 (징계의결의 기한)** ① 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06.26.)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신설 2019.06.26.)

**제8조 (진상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는 서면으로 진술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전화로 징계대상자를 소환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거나, 2회 이상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대상자의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의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제척)** 징계위원중 징계혐의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그 자신이 징계혐의자일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위원회의 정족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3조 (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에 주문과 이유를 밝혀 의결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임면권자는 전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결정서를 징계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8.31)

**제14조 (재심)** 전조 제2항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하며, 그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규정의 개정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의결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개정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조 본문에 따른다

② 제7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본 규정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징계의결요구서

인 적 사 항	① 성 명	한 글		②소 속		③직 급 (직 위)	
		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재직기간	
	⑥주 소						
⑦징계종류							
⑧징계사유							
⑨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p>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p> <p><b>학교법인 세기학원 이사장</b></p> <p>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p>							

확 인 서

인적사항	①소 속		②직 위( 직 급 )		③성 명	
	현 재		현 재		한 글	
	혐의당시		혐의당시		한 자	
비위유형	① 금품 및 향응 수수관계 (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② 공금의 횡령 유용관계 (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③ 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 대상비위 해당여부	① 공 적 사 항			② 징계사항(경고조치포함)		
	포상일자	포상종류	시행청	일 자	종 류	발령청
	③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혐의자의 평소소행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기 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및직위) (직급) (성명) (인)  20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b>학교법인 세기학원 이사장</b>						

징계사유설명서

인 적 사 항	① 성 명	한 글		②소 속		③직 급 (직 위)	
		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성 별	
	⑥주 소						
⑦ 징 계 종 류							
⑧ 징 계 사 유							
⑨ 징 계 사 유 근 거							
<p>위와 같이 징계사유설명서를 송부함. 20   년   월   일</p> <p>학교법인 세기학원 이사장 귀하</p>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①성 명	한 글		②소 속	
		한 자		③직위(직급)	
	④주 소				
⑤출석이유					
⑥출석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⑦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며,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함			
직원징계위원회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법인 세기학원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 절 취 선 )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①성 명	한 글		②소 속	
		한 자		③직위(직급)	
	④주 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학교법인 세기학원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징 계 의 결 서

징 계 형 의 자 인 적 사 항	소 속	직 위(급)	성 명										
의 결 주 문													
이 유													
<p>위와 같이 의결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학교법인 세기학원 교원징계위원회</p> <table style="width: 100%;"><tr><td style="text-align: right;">위원장</td><td style="text-align: right;">(인)</td></tr><tr><td style="text-align: right;">위 원</td><td style="text-align: right;">(인)</td></tr><tr><td style="text-align: right;">위 원</td><td style="text-align: right;">(인)</td></tr><tr><td style="text-align: right;">위 원</td><td style="text-align: right;">(인)</td></tr><tr><td style="text-align: right;">위 원</td><td style="text-align: right;">(인)</td></tr></table>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징계처분통지서

인 적 사 항	① 성 명	한 글		②소 속		③직 급 (직 위)	
		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성 별	
	⑥주 소						
⑦ 주 문							
⑧ 이 유							
<p>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법인 세기학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인)</p> <p>학교법인 세기학원 이사장 귀하</p>							

징계처분사유결정서

①소 속	②직 위(급)	③성 명
④주 문		
⑤이 유		
<p>위와 같이 처분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p> <p>20 년 월 일</p> <p>학교법인 세기학원 이사장(인) 귀하</p>		
<p>참고: 이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